

충청북도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 환경기초 시설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

심사 보고

1993. 4. 14

문교사회위원회

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 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3년 1월 29일

○ 회부일자 : 1993년 1월 29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87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(1993. 3. 4) 상정

○ 제88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(1993. 4. 12) 재상정,
의결.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환경관리과장 박석호)

가. 제안이유

大清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에 설치되는 환경기초 시설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大清湖 특별대책지역 안에 설치되는 환경기초 시설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세입, 세출 항목 및 운용 전반에 관한 일반 원칙 규정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김영만)

본 조례안은 大清상수원의 수질을 개선, 보존하기 위하여(환경보전법 <1986. 12. 31> 제 7조에 의하던 것을 환경정책기본법<1990. 8. 1> 제22조를 근거로 한) 환경처 고시 제90-15호(90.7.19)에 의해 대청호 유역 666.22 ㎢가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 처리장, 간이오수 처리장, 축산폐수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3개 市.道(대전직할시, 충청북도, 충청남도)가 분담하기로 한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관한 협약서(案)를 바탕으로 하여 시설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관리 등 세입·세출항목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, 추가 제출된 협약서(案) 내용中 본문 제9조(분담요소 및 대상시설의 조정)의 내용중 "2년마다 상호협의하여 조정한다" 와 부칙 제3조(유효기간) "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"의 모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"없음"

5. 토론 요지 : "없음"

6. 심사 경과 : "원안 가결"

7. 소수의견 요지 : ”당초 작성된 충청북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
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관한 협약서 내용중 대전직
할시에서 ”유효기간을 9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”
로 부칙을 달아 의결함에 따라 협약서 내용이 모순
되어 의결을 유보하였으나, 이문제가 해결됨이 따라
본 조례안은 타당함.”

8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조례안